

별표 6 제2호가목 중 “(뱅머신)”을 “(고무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수란 중 “1대”를 “5대”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을 마목으로 한다.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가. 관리 책임자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시험자 또는 검사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4명 이상

2. 장비 기준

장비명	대수
가.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태핑머신) 및 표준 중량충격	각 1대 이상

음 발생기(고무공)	
나. KS C-1502에서 정한 보통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5대 이상
다. 주파수 분석기	1대 이상
라. 음압레벨교정기 (Calibrator)	1대 이상
마. 인공소음발생기, 스피커, 잔향시간 측정 장비	각 1대 이상